

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			
등록번호		등 록 일	
소재지		폐 업 일	
사 유			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평가대행자 (서명 또는 인)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			